

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 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3월 12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「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」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**

**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**

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「기업·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(“24.12.18.)」 후속조치로, 산업단지 실시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의무화 한 '14.7.14일 이전에 지정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변경·수립할 때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

**2. 의견제출**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(산업입지정책과장)로 2025. 3.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 전문은 우리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lit.go.kr>)의 정책자료→법령정보→입법예고·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보내실 곳 주소 : (우편번호: 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
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(팩스 : 044-201-5564)